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성흠제 의원 (찬성자 22명)

나. 의안번호 : 제 1416 호

다. 발의일자 : 2020. 4. 3.

라. 회부일자 : 2020. 4. 8.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신설('17.10월)하고, 인증기관을 별도로 지정 (한국시설안전공단)하여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시행('19.3월)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지진안전성 표시제'에서는 표시 발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으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어졌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4항(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18.10.25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이하 ‘법’) 제16조의3¹⁾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새로이 도입되고 ‘19.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행 조례의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이는 법 제16조의3제4항에 행정안전부가 행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이외의 어떠한 인증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도 불허하고 있어 현행 조례가 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전락되었고,
- 기존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행 시에는 표시 발급 등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으나 행안부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사라짐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짐.

-
- 1)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지진안전성 표시제’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비교

구 분		지진안전성 표시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표시/인증 요건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보고서/ 책임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서로 표시명판 교부	지진안전시설물 자체평가서/ 공인 인증기관 검증으로 인증명판 교부
발 급 대 상	·신축 내진설계적용 건축물	○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확보 건축물	○	○
	·내진보강공사 완료 건축물	○	○
인증수수료		-	4.8~6.8백만원/동

- 한편, 현행 조례에 의해 기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2) 경과조치에 따라 설계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서울시의 경우 현행 조례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민간 건축물은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로, 이는 현행 조례가 시행(‘17.6.1.)된 직후 상위법령이 개정(‘17.10.24.)되면서 조례 시행기간이 짧았고 건축주들의 관심도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참고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가 ‘17.1.5일 제정된 후 그 해 10월에 법이 개정(시행 ‘18.10.25.)되었으며, ‘18.12.4일 같은 법 시행령³⁾ 개정과

2) 부칙 제2조(경과조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방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청교육감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설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5호, 2018. 12. 4., 일부개정]

‘19.2.14일 시행규칙4)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가 ‘19.3.6일 ‘지진안전성 표시제’ 종료를 공식 선언(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576, ‘19.2.28.)함.

◆ 행안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추진 경과

- ‘17. 1. 5. 서울시, 해당 조례 제정(시행 2017.6.1.)
- ‘17. 10. 2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시행 ‘18.10.25.)
 - 제16조의3 신설
- ‘18. 12.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시행 ‘18.12.4.)
 - 제11조의4 및 별표 2의2 신설
 - 제11조의5 및 별표 2의3 신설
- ‘19. 2. 1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19.2.14.)
 - 제3조의5 및 제3조의6 신설
- ‘19. 3. 6. 행정안전부, ‘지진안전성 표시제’ 종료
- ‘19. 3. 7.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
- ‘20. 1. 15. 행정안전부, 조례 폐지 협조요청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신설(제11조의4 및 별표 2의2 신설)
 -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등으로 정함.
 -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은 내진설계 및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3)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1조의5 및 별표 2의3 신설)
 - 1)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업무를 수행할 사무실과 철근탐사장비 등을 갖추고, 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상근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도록 함.
 - 2)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을 정함.
-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시행 2019. 2. 14.] [행정안전부령 제101호, 2019. 2. 14., 일부개정]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및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서식(제3조의5 및 제3조의6 신설)
 - 내진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대상·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함.